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주요 내용

### \*‘교회 정치’와 관련한 내용 발췌

#### [제3부 교회정치]

##### 제2장 교회

###### 제4조 지교회의 정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 제5조 지교회의 설립

합당한 예배장소가 준비되고 교회유지가 가능하게 되면 교역자는 ‘노회’에 지교회 설립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 제3장 교인

###### 제1조 교인의 구분

1. 입교인: 15세 이상 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를 받은 후 입교한 자
2. 유아세례 교인: 입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에 세례 받은 자. 아이는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3. 학습교인: 등록교인중 15세 이상 된 자로서 학습 문답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학습하는 자이다.

## 제2조 교인의 의무

1. 모든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출석할 것
2. 교회의 발전에 합력,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
3.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하며,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로 협력할 것
4. 성경을 힘써 배우고 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것
5.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할 것

## 제3조 교인(회원)의 권리

1.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권리
2. 성찬에 참여할 권리, 봉사할 권리
3.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
4. 선거권
5. 6개월 이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권리가 중지됨
6. 헌법의 절차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가짐

## 제4조 교인의 이명

1.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받게 하여 교회의 보호 아래 둘 것이며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
2. 교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본교회 당회장은 그 교인의 이주 사실을 그 지역의 지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교인이 다른 지역의 교회로 이명하기를 원할 때에는, 당회는 이명증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
4. 이명서 제출 기한은 1년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이명서를 제출하고 그 지역에 가입해야 한다.
5. 타교회로 가기 위해 이명서를 받은 순간부터 본교회 회원권은 사라진다.
6.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교회로 반환하면 당회는 이명서를 받은 후에 기록하고,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7. 이명서 없이 교회를 떠나고 아무 연락도 없이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은 정지되고, 2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의 명단에 올리며, 3년 경과하면 교인 명부에

서 삭제한다.

8. 본교회의 이명증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니 당회는 그를 제명하고, 당회록에 기록할 것이며, 혹 송사 안건이 있었다면 계속 재판 할 수 있다.

## 제4장 교회의 직원

### 제2조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이다.
2. ‘항존’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지, 특정인이 한번 직분을 받으면 그가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교회 직원은 정년은 70세이다.

### 제3조 교회 임시 직원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1. 전도사: 당회(목사)의 추천으로 노회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후 지교회를 섬기는 유급 교역자이다. (합신을 졸업한자는 노회 시험 면제)
2. 전도인: 남녀 전도인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유급직원이다(타교단 신학교 졸업자 포함).
3. 권사: 여신도중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서 흄없이 5년 이상 서리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서 6개월간 당회의 교육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명하여 온 자는 이명증을 확인하고, 흄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피선될 수 있다.
4. 서리집사: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 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이다.

## 제9장 장로

### 제1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

### 제2조 장로의 자격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해당 지교회에서 흡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된자로서 6개월간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하여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딤전3:1-7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단, 타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이명’ 온 장로는 그 지교회에서 흡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피택될 수 있다.

### 제3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장로는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력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는 못한다.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데 수종든다.
2. 교리나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3.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를 위로하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한다.
4.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5. 심방할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의 심방을 청해야 한다.
6.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을 받아야 할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 제10장 (안수) 집사

### 제2조 (안수) 집사의 자격

집사는 30세 이상된 남신자로서 흡없이 해당 지교회 출석을 5년 이상 된 자로

(타교회에서 온 안수집사는 흡없이 3년 경과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여야 한다. 일반 신자보다 더욱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한다.

### 제3조 (안수) 집사의 의무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 과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 제11장 장로와 안수집사 선거 및 사면

### 제1조 선거 방법

장로와 집사는 지교회 공동의회 시 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제2조 취임 승낙

지교회에서 피선된 장로는 노회 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안수 집사는 당회에서 시험하여 피선된 본인이 승낙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 제4조 신임 투표에 의한 사명

장로와 안수집사는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하며, 투표는 과반수이다.

### 제5조 자유 사면과 사직

장로, 안수집사가 여러 이유로 시무할 수 없게 되든지, 그의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청원에 의해 사직/사면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제6조 권고 사면과 사직

장로, 안수집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오히가 협의 결정하여 사명,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다.

## **제15장 당회**

### **제1조 당회 조직**

당회 조직은 지교회 목사1명, 장로1명으로 성립되며, 성도는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필요하다.

### **제2조 당회 성수**

지교회에 장로가 2명일 경우에 목사 1명+장로1명 출석하면 당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장로가 1명일 경우에는 목사와 함께 모든 일을 행하되, 해당 장로가 치리문제나 사건이 있다면 목사는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처리하게 한다.

### **제3조 당회장**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시행한다.

## **제20장 의회**

###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입교인(회원)
2. 소집: 당회가 필요로 할 때,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 서기를 겸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 일시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의안을 미리 알린다. 모인 인원수가 적으면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
  - 1)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 2) 제직회와 교회 소식 기관의 종합보고
  - 3) 교회의 재정 결산과 예산안
  - 4) 기타 의결은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는 3분의 2이상 가표로 선정)

## **제21장 제직회**

### **제1조 조직**

제직회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안수집사.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하고, 서기,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형편에 따라 교역자,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 수 있다.

### **제2조 미조직 교회 제직회**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등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 **제3조 제직회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
2. 구제와 교회 경비 출납 처리한다.
3. 매년 말 공동의회에서 1년간 경과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여 회의 통과를 받으며, 회계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다.
4. 필요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한다.

### **제4조 정기모임, 임시모임**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모임으로 가지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